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51189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나785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5118998 판결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피 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박화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수경

변 론 종 결 2021. 10. 12.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6. 체결된 매매계약은

164,115,27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4,115,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은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2014. 9. 11.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3598(본소), 2015가합21575(반소)}, 2016. 7. 7.【D는 주식회사 E에게 124,614,675원 및 그 중 113,114,675원에 대하여는 2013. 8. 1.부터, 1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각 2016.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7. 11. 8. 확정되었다1).

나. E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2017. 2. 7. 파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330), G가 E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8. 2. 13. E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D는 피고(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에게 2016. 2.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에게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피고에 대하여 2021.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2021회합10006)

이 있어 사내이사 C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 성립여부

가.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피고는, 원고가 E의 승계인으로서 2018. 4. 16. 기초사실 가.항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고, 2018. 11. 16. D의 채무자인 J 주식회사에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2018. 11. 19. D의 채무자인 K공제조합에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2018. 11.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1년이 도과하여 2020. 4. 2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9,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1868 배당이의 사건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2020. 4.경 창원시 성산구청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D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안 것으로 보이므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2013. 2. 28.경 공사를 완료하여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D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 적극재산(갑 1 내지 4)

이 사건 부동산 시가 826,678,180원, J 공사대금채권 35,000,000원, K공제조합 출자 지분 51,810,000원

◆ 소극재산(갑 6 내지 8)

E 공사대금 144,023,636원, L회사 선금금 반환채무 208,353,485원, M회사 매매대금 채무

2,956,390원, N 전세금반환채무 50,000,000원

라.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D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E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소송 진행 중 이루어진 점, ② D와 피고의 본점이 '창원시 성산구 O'으로 동일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P이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를 겸임하는 점, 그 이외에 C, Q, R 등이 D와 피고의 이사 및 감사를 역임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피고가 적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마. 피고의 선의 항변

위 라.항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016.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I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가까운 현재 원고의 채권액은 164,115,270원(별지 기재 참조)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금액을 가액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4,115,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별지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김해시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9층 제1, 2층근원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지하3, 2층 각 1,224.35㎡

지하1층 1,354.35㎡

1층 1,287.95㎡

2 내지 8층 각 1,349.50㎡

9층 819.7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김해시 대 1700.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10.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700.7분의 20.6219

2.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 오피스텔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2층 업무시설

1층 199.86㎡

3 내지 11층 각 525.66㎡

지1층 576.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 330.6㎡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 428.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8.2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30.6분의 4.22

2. 소유권대지권 428.1분의 5.46

3.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8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지하2층(발전기실, 펌프실) 64.4383㎡

지하1층(주차장, 감시제어반실) 478.1822㎡

1층(제1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403.8202㎡

2. 내지 4, 7층(제1종근린생활시설) 각 421.0161㎡

5, 6층(제1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각 421.0161㎡

8층(제1종근린생활시설) 181.943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장용지 338.8㎡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 210.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87.349㎡(의원)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549.4분의 42.3055

4.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라브지붕 8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지하2층(발전기실, 펌프실) 64.4383㎡

지하1층(주차장, 감시제어반실) 478.1822㎡

1층(제1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403.8202㎡

2 내지 4, 7층(제1종근린생활시설) 각 421.0161㎡

5, 6층(제1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각 421.0161㎡

8층(제1종근린생활시설) 181.943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장용지 338.8㎡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 210.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53.0509㎡(의원)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549.4분의 34.5606

.. 끝 ..

총당액 계산표

총당구분 : 합당총합

1: 2014.7월23일

합본

일	계정당월일	계정액(원)	이행기	최고 25일일	변 이행(%)	이행시기	최종 합과
2014.7	2013.08.27	313,314,875	2013.08.27	2013.08.27	8.00	2013.08.27	비지배권부
2014.8	2013.08.27	31,302,300원	2013.08.27	2013.08.27	8.00	2013.08.27	비지배권부

합본

일	연세액	평균(원)	최종 이행(%)	시작일	종료일	당월 이자	이 누계액	총합 누계액	이 누계액	총합 누계액	당월 잔액	이자 잔액
4.13	8,710,000원	113,114,875	+18.00	2013.08.27	2014.02.13	84,133,384	84,133,384	2	1,348,384	0	113,114,875	82,874,813
5.17	87,700,000원	113,114,875	+18.00	2013.08.27	2014.02.17	4,309,149	88,442,533	2	18,149	0	113,114,875	47,948,370
5.29	87,180,400원	113,114,875	+18.00	2013.08.27	2014.02.29	436,507	88,879,040	1	2,000,814	0	113,114,875	4,819,580
6.18	1원	113,114,875	+18.00	2013.08.27	2014.03.18	28,488,708	117,367,748	2	1	0	113,114,875	35,880,378

이자 계산(원)

계산
1
[113,114,875 * 18.00 * 5 * 360 / 360] * 2.15 * 10 = 201 * 3600 [2013.08.27 - 2014.02.27 180일, 2014.02.28 - 2014.02.19 10일]
[11,302,300 * 18.00 * 10 * 360 / 360] * 2.15 * 10 * 20 = 201 * 3600 [2013.08.27 - 2014.02.27 180일, 2014.02.28 - 2014.02.19 10일]
8.17
[11,302,300 * 18.00 * 10 * 360 / 360] * 2.15 * 10 * 20 = 201 * 3600 [2013.08.27 - 2014.02.27 180일, 2014.02.28 - 2014.02.19 10일]
2.25
[113,114,875 * 18.00 * 10 * 360 / 360] * 2.15 * 10 * 20 = 201 * 3600 [2013.08.27 - 2014.02.27 180일, 2014.02.28 - 2014.02.19 10일]
46.18
[113,114,875 * 18.00 * 10 * 360 / 360] * 2.15 * 10 * 20 = 201 * 3600 [2013.08.27 - 2014.02.27 180일, 2014.02.28 - 2014.02.19 10일]
[11,302,300 * 18.00 * 10 * 360 / 360] * 2.15 * 10 * 20 = 201 * 3600 [2013.08.27 - 2014.02.27 180일, 2014.02.28 - 2014.02.19 10일]

1)서울고등법원 2016나2055378(본소), 2016나2055385(반소), 대법원 2017다242768(본소),
2017다242775(반소)